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8
----------	-----

2019년 12월 1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10.8. 황인구 의원 외 41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8.10.29.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한반도는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서울특별시 또한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의 영역에서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방정부 중심의 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바 있음.
-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교류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서울시는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시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문화, 체육, 경제 영역에서의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붙임. 1), 이를 전담해 지원할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였음(’18. 11. 1).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추진하게 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해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¹⁾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의 고유한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위원회가 구성²⁾될 경우 소관업무 중복이나 활동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미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이나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붙임. 2)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타당성은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는 물론이고 전속적으로 소관위원회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향후 서울과 평양간의 도시협력사업의 본격 실행단계에서는 관련 위원회 모두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³⁾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조희하였음(붙임. 3)

1)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3. 기획경제위원회

라. 남북협력추진단에 관한 사항

2)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기획경제위원회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설된 전담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사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붙임. 1).
- 한편, 남북 정상선언 합의 과제 중 우선 추진과제인 사회문화교류 (2023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서울-평양(경평) 축구대회 재개, 남북 예술단 상호방문공연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남북교류협력 우선과제 사업을 소관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별도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48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8일

발 의 자 : 황인구, 장인홍, 김정태,
정재웅, 이태성, 김수규,
장상기, 채유미, 최 선,
박순규, 유 용, 안광석,
최기찬, 양민규, 김춘례,
문장길, 이영실, 김경영,
강대호, 최정순, 김혜련,
오중석, 이병도, 신정호,
송명화, 성흠제, 김평남,
권수정, 박상구, 이준형,
김경우, 박기재, 송정빈,
김 경, 김달호, 권순선,
이동현, 김호평, 김화숙,
임종국, 이광호, 이호대
의원(42명)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방정부 중심의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 제안이유

- 현재 한반도는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서울특별시 또한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의 영역에서 북한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남북은 판문점에서 4·12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남북정상이 우호적으로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교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특별공연 등을 지원하며 남북 교류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 남북 교류협력 확대는 남북 상호 신뢰구축, 화해분위기 조성 및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실현하고, 전쟁 및 단절이 빚은 남북의 이질적 체제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교류 및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족 화해 및 공동번영 달성과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8.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